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기존 국제통화기금 42억9천특별인출권을 42억9천140만 특별인출권으로 변경하고, 기존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 출자금을 1천412억6천334만원에서 1천467억7천579만원으로 변경하고, 국제개발협회에 8천456억원을 출자하며, 미주투자공사에 1억5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사항 외에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5. 10. 00. ~ 11. 0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42억9천140만 특별인출권
----	------------	-----------------

별표 3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출자 및 출연	1천467억7천579만원
22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8천456억원

별표 1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1억5천만 미합중국달러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연 락 처	(044) 215 - 8725